

# 2020. 1. 13. 보도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 제 목 : 1월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1. 16.(목)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비고
1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2018헌마90·145 관련 긴급대책 등 · 391(병합) 위헌확인	정○○ 외 347 (정희찬)	금융위원회 (정부법무공단)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 보도자료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사건

[2017헌마1384, 2018헌마90, 2018헌마145, 2018헌마391(병합)]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 [ 공개 변론 ]

헌법재판소는 2020년 1월 16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7. 12. 30. 접수된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이하 사건명 같음), 2018. 1. 28. 접수된 2018헌마90, 2018. 2. 8. 접수된 2018헌마145, 2018. 4. 13. 접수된 2018헌마391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 1. 13.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 변호사 정○○은 □□이라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회원가입을 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위 취급업소에 3,000원을 위탁한 후 이 중 약 2,000원으로 비트코인 가상통화를 구매한 사람이다.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라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회원가입을 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다.
- 정부는 2017. 12. 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7. 12. 28. 10:00 재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비롯한 대책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들의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은 2017. 12. 29.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통한 입금 거래가 중단됨을 공지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20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 12. 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명확인 가상계좌’)이 2018. 1. 30.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2018. 1. 23.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2018. 1. 23.부터 2018. 1. 29.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2018. 1. 3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구인들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과 같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2017. 12. 13.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및 2017. 12. 28.자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집행 및 실현 과정에 해당하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 청구인들 주장 요지

- 이 사건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시중 은행들이지만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긍정된다. 2018. 1. 30.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거래 자금 입금에 있어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조치는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적 권리관계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형성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및 경제상 자유와 창작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거래방식을 규제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의견 요지

- 이 사건 조치는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요청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

당하여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시중 은행들일 뿐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간접적·사실적 효과를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2018. 1. 30.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

- 이 사건 조치는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은행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 등에 따른 것이다. 가상계좌는 서비스일 뿐 청구인들이 그 자유로운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조치가 있더라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 주요 쟁점

- 이 사건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 □ 참고인 의견 요지

- 참고인 :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장우진(청구인들 측)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한호현(피청구인 측)
- 참고인 장우진 의견 요지
  - 가상통화는 ‘거래 익명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한다.
  - 가상통화 시장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할 때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는 필요했다고 여겨지지만, 이로 인해 야기된 기존 가상

통화 시장 참여자들의 자산손실은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결과이었던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점진적이고 완화된 가상통화 거래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고, 규제 방법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 참고인 한호현 의견 요지

- 가상통화는 보내고 받는 이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실물이 없이 이전이 용이한 컴퓨터의 기록에만 존재한다. 가상통화의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현금보다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 등에 용이하게 이용된다.

- 가상통화 및 그 기반 기술 블록체인은 ‘개인키, 공개키, 디지털서명’ 등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지만, 개인키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그 거래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 즉, 거래 행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은 기존 금융의 규제 체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가상통화 이용자나 취급업소에 대하여만 예외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